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별표3)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자 격 요 건	
	현 조문	수정안
1급정사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자</u> 2.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문헌정보학 또는 <u>도서관학과외의 박사학위를</u>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자 3.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근무경력 기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이상 있는 자로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근무경력이 9년이상 있는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u> 2.<u>도서관학과외의 학문을 전공하여</u>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2급정사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u>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자</u> 2. <u>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석사학위를</u> 받은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에서 <u>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그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 취득한 자</u> 2. <u>도서관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u>

<p>2급정사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 또는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문헌정보학 또는 <u>도서관학외의 석사학위</u>를 받은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6.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u>3년이상</u> 있는 자로서 지정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7.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1년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현행과 같음) 4. ... <u>도서관학외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u> 5. (현행과 같음) 6. <u>2년이상</u> 7. (현행과 같음)
<p>준사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문대학 문헌정보과 또는 도서관과를 졸업한 자</u> 2. 전문대학(중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u>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자</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문대학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u> 2. (현행과 같음) 3. <u>대학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자로서 재학 중 그 전공과목의 취득학점이 50학점 미만인 자</u>

비고 : 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아니한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에 서의 근무경력은 당해 도서관의 열람실 면적이 110제곱미터 · 자료가 1천500권 (시청각자료인 경우에는 점)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 표에 의한 도서관등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경과규정 : 1998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대학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경우에는 그 학점수에 관계없이 2급정사서 1호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1999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대학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자는 준사서 3호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수신 : 성남시장

참조 : 도서관지원사업소장

제목 : 문화정보센터설치및위탁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시가 1999년 8월 10일자로 발표한 문화정보센터설치및위탁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우리 협회의 의견서를 보내오니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 : 성남시립도서관 운영 의견서 1부. 끝.

성남시립도서관 운영 의견서

한국도서관협회는 성남시청이 제정하고자 하는 '성남시 문화정보센터(시립도서관)설치 및 위탁운영조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서관 명칭의 문제]

성남시에서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의 명칭은 '○○문화정보센터'가 아니라 '성남시립○○도서관'으로 하여야 함.

[이유]

- ① 시설의 명칭이 '도서관'이 아닐 경우에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도서관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각종의 도서관에 대한 지원과 전국적인 도서관 정보망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등, 성남 시민들의 지식과 정보습득, 활용에 큰 지장을 주게 될 것임.
- ② 명칭을 도서관이 아닌 문화정보센터로할 경우, 시설의 성격이 모호해짐으로써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여타의 문화센터와 같은 내용으로 운영될 수 있어 초기 건립목적에서 크게 변질될 수밖에 없어 결국 지식과 정보의 보고인 도서관을 원한 시민들의 바람을 저버리게 되어 시민들로부터 민원을 야기하게 될 것임.

[도서관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문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리운영을 교육기관, 민간사회단체, 공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공도서관 이념과 기능을 무시한 처사이며, 현실적으로도 도서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이념과 전문 기술, 재정부담능력을 갖춘 민간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를 강행할 경우 도서관 운영의 부실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임. 따라서 성남시립도서관은 반드시 시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조례(안)에서의 민간위탁 관련 조항은 전부 삭제하여야 함.

[이유]

- ① 공공도서관은 민주시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적인 공공의 장치임. 따라서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공공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지적자유권, 문화향수권 보장을 위한 헌법상의 《책임》을 수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도서관정책의 출발점이 되고 있으며, 국제연합(유네스코) 공공 도서관선언의 기본 철학임. 또한 우리 나라에서도 도서관 기본법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에서 이러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음.
- ② 또한 최근 들어 책임 있고 전문적인 양질의 도서관 봉사를 제공해 달라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더욱 늘어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 지방자치단체들은 무엇보다도 납세자인 지역주민들의 기본적인 정당한 요구에 근거하여 공공도서관 활성화에 나서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재정적 이유를 내세워 공공도서관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겠다는 것은 내세우고 있는 명분이 무엇이든 결국은 권한의 이양이 아닌 책임의 유기일뿐임. 소위 행정개혁이라는 물결을 타고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을 기도하였던 세계 유일의 나라 일본의 경우, 실제로 위탁이 실시되었던 몇몇 도서관들은 결국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마침내 위탁논의 자체가 숨어들게 된 사례는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은 옳지 못한 행정조치가 아닐 수 없음.
- ③ 공공성이 높고, 21세기 문화, 지식과 정보의 시대의 핵심역량이 되는 공공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한다면 공공성 훼손 뿐 아니라 도서관 자료 부실, 유능한 인적자원의 이탈 등으로 이어져 결국 도서관 서비스의 총체적 부실을 가져올 것이 명백함. 또한 공공도서관 문제는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이념과 직결되어 있는 사안으로 단순히 인력이나 예산 등의 이유로 행정적 편의를 위하여 그 취지가 결정될 사안이 못되는 것임.

[운영위원회 설치 문제]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의 바람직한 사항임. 다만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회의를 규정하고 상임간사를 두어 시의 도서관정책을 지원하고 집행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유]

- ① 도서관은 시민들의 지식·정보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민주의식 함양과 주인으로서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의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 운영의 권한을 시 행정직원들이 아닌시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 따라서 조례로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임.
- ② 운영위원회는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정기적인 회의개최를 규정하고, 연중 도서관 운영에 참여하기 위하여 상임간사를 두어 시의 도서관 정책담당자와 함께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일반열람실 문제]

도서관은 명실상부한 지식과 정보의 보고로 더 이상 일반열람실 운영의 의미가 없으므로 모든 시립도서관에서 일반열람실은 없애는 대신 자료열람실을 확대설치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유]

- ① 도서관에 일반열람실을 두고 운영해 온 것은 1950-60년대 경제개발 초기 각 가정에 개별적인 학습공간을 가질 수 없었던 때, 당시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던 교육부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도서관에 공부방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열람실을 설치, 운영해 온 것임. 그러나 이제 경제발전을 이루어 각 가정에서나 학교에서의 자기학습이 충분히 가능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교육개혁으로 인하여 더 이상 교과서 위주의 학습은 의미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공공기관인 도서관에서 계속하여 학생들의 폐쇄적인 자기학습공간을 지원할 필요성이 상실되었음.
- ② 도서관은 교육기능 뿐 아니라 지식과 정보의 수집, 보존, 활용을 지원하는 지식정보사회의 핵심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도서관의 1차적 기능은 시민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제공이 되어야 함. 따라서 도서관의 모든 기능은 이러한 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개방적이고 공개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함.
- ③ 도서관에 계속해서 일반열람실을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도서관이 지식정보시대의 핵심기관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교과서 중심의 학교교육 보조시설로 전락할 것임.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세금으로 건립, 운영될 시립도서관에 일반열람실을 설치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님.
- ④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에도 일반열람실을 전면 폐지하여 전관을 자료열람실로 운영하고 있는 바,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 ⑤ 1998년부터 문화관광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문화기반시설 평가에서 국립공공도서관의 경우 일반열람실 설치와 유지는 감점요인이 되고 있음. 평가결과와 우수한 도서관의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도서관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반열람실 설치,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음.

수신 : 서귀포시장

제목 : 서귀포시립도서관 기능 활성화 방안 건의

1. 관련 : 서귀포시 총무 12200-2841(1999.7.9.)
2. 귀 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시립도서관 통합방침에 대하여 우리 협회가 귀 시에 통합 불가를 청원(한도협 제99-113호(1999.7.3.))한 것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3. 귀 시는 이번 도서관 관리부서의 일원화(통합)의 목적이 지역주민에 대한 도서관 봉사이념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나, 향후 계속 개관할 도서관 등의 운영을 위하여 신규 사업소로 기구를 증설하여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불 종합문예진흥사

업소로 통합, 운영부서의 일원화를 통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4. 그러나 조직개편이 단기적인 현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각종 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도서관 관리업무를 도서관의 봉사이념과 그 성격과 내용이 다른 문예회관이나 미술관 등을 관리하는 종합 문예진흥사업소에 통합하는 것은 오히려 도서관 서비스를 위축시키고 왜곡시켜 결국 21세기 지식과 정보의 시대에 필요한 좋은 시립도서관으로서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5. 이에 우리 협회는 귀 시가 도서관 기능 강화와 1999년과 2001년에 추가로 도서관을 개관하여 보다 나은 도서관 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현재의 시립도서관을 중심으로 추가로 개관되는 개의 도서관을 묶어 관리하는 방법(분관 네트워크 체제)으로 도서관의 특성과 내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6. 다시 한번 도서관을 종합문예진흥사업소에 귀속시키겠다는 방침을 철회하고 도서관을 별도의 사업소로 유지하면서 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 협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명실상부하게 지역주민을 위한 효과적인 도서관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21세기 살기좋은 서귀포시를 만드는데 기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 사안에 대한 귀 시의 합리적인 판단과 정책결정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수신 : 서귀포시장

제목 : 서귀포시립도서관 통합 불가 청원

1.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귀 시에서 2단계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립도서관과 동부도서관을 종합문예진흥사업소의 산하기관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3.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이란 정보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제 공함으로써, 정보봉사·조사·연구 등 지역문화발전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법정(法定) 조직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서관은 특히 21세기 문화의 시대, 지식기반사회의 필수적 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재 귀 시를 비롯하여 우리 나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과 투자 부족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충실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4. 그러나 21세기에는 공공도서관과 같은 지식과 정보, 그리고 교육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기관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한 정부에서도 올해 국정지표 중 하나를 <지식기반의 확충>으로 정하고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도서관 확충과 이를 통한 국민들의 책읽기 운동의 전개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 ④

5.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의 조직개편이 단순히 조직이나 인력 축소가 그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지향적 행정서비스 체제 구축에 있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정보화시대의 핵심기관이 공공도서관을 종합문예진흥사업소의 산하기구로 축소, 그 지위를 하락시키는 것은 결코 21세기 도시행정 개선에 적합한 방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도서관을 지식기반 사회 핵심 행정서비스 기관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6. 이에 우리 협회는 귀 시가 조직개편을 단행함에 있어 명실상부하게 21세기 선진 도시행정 지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공공도서관을 사업소의 산하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즉각 철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7. 아울러 우리 협회는 귀 시가 우리의 요청을 심사숙고하시어 정부의 도서관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정책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 다시 한번 귀 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료 ⑤

개정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471호, 관보 1999.7.16.게재)

현 행 령	개 정 령
제5조【사서직원의 자격요건등】 ①항 생략 ②사서직원은 별표3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사서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제5조【사서직원의 자격요건등】①항(현행과 같음) ②.....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제6조【시책】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사서직원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2호 생략	제6조【시책】 문화관광부장관이 1-2호 (현행과 같음)
제8조【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의 관리·운용등】 ①항 1-6호 생략 ②항 본문 및 1호 생략 2.기타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③문화체육부장관은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여유자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한다. 1-3호 생략	제8조【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의 관리·운용등】 ①항 1-6호 (현행과 같음) ②항 본문 및 1호 (현행과 같음) 2. 문화관광부장관이 ③문화관광부장관은 1-3호 (현행과 같음)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계획】 ①문화체육
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 3월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및독
서진흥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
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2항 생략

제10조【기금의 회계기관등】 ① 문화체육부
장관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사
무를 위임받은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
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 명령관
과 그 기금의 기출 및 수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
다.

② 문화체육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금
의 운용을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항 생략

②위원장은 문화체육부차관이 되고, 부위
원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재정경제원·내무부·재무부·교육부·
문화체육부·보건복지부·체신부·총무
처 및 과학기술처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
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호 생략

3.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기타 도
서관·문고 및 독서·출판업무에 관한 학
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항 생략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계획】 ①문화관광
부장관은

2항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금의 회계기관등】 ① 문화관광부
장관.....

광역시장

② 문화관광부장관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항 (현행과 같음)

②.....문화관광부차관이

1. 행정자치부·교육부·과학기술부·문화관
광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및 기획예
산처

2호 (현행과 같음)

3.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항 (현행과 같음)

<p>제14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u>문화체육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임명한다.</u></p>	<p>제14조 【위원회의 간사】 <u>문화관광부</u><u>문화관광부</u> 장관이 임명한다.</p>
<p>제15조 【지방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①항 생략 ②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경우에는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지역대표관의 장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지방대표관의 장(지방대표관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2호 생략 ③-④항 생략</p>	<p>제15조 【지방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①항 (현행과 같음) ②.....<u>광역시</u> 1-2호 (현행과 같음) ③-④항 (현행과 같음)</p>
<p>제21조 【자료의 제출등】 ①-②항 생략 ③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자료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출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u>문화체육부령</u>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국립 중앙도서관장은 <u>문화체육부령</u>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 대표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료 제출업무의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21조【자료의 제출등】 ①-②항 (현행과 같음)<u>문화관광부령</u>이 ④.....<u>문화관광부령</u>이</p>
<p>제22조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①항 생략 ②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u>문화체육부령</u>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료번호부여신청서에 출판사의 연혁·출판실적 기타 참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⑤항 생략</p>	<p>제22조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①항 (현행과 같음) ②<u>문화관광부령</u> ③-⑤항 (현행과 같음)</p>

<p>제28조 【사립공공도서관등의 등록】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설립등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u>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28조 【사립공공도서관등의 등록】..... 문화관광부장관에게 </p>
<p>제30조 【사립공공도서관등의 폐관신고】 법 제27조(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폐관 신고서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0조 <삭제></p>
<p>제35조 【협력망운영계획】 ①항 생략 ②지역대표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력망운영계획에 따라 당해 특별시·<u>직할시</u> 및 도의 협력망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중앙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항 생략</p>	<p>제35조 【협력망운영계획】 ①항 (현행과 같음) ②..... 광역시 ③-④항 (현행과 같음)</p>
<p>제38조 【권한의 위임등】 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호 생략 2. 법 제25조(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u>사립공공도서관의 등록·시정명령 또는 등록취소에 관한 업무</u> 3호 생략 4. 법 제27조(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u>사립공공도서관의 폐관신고의 수리</u> 5호 생략 6. 법 제53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u>과태료의 부과·징수</u></p>	<p>제38조 【권한의 위임등】문화관광부장관은 1호 (현행과 같음) 2. <u>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공공도서관의 등록</u> 3호 (현행과 같음) 4..... <u>폐관시 등록증 반납에 관한 업무</u> 5호 (현행과 같음) 6호 <삭제></p>
<p>제39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u>문화체육부장관이</u>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p>	<p>제39조 【과태료의 부과】 ①..... 문화관광부장관이 </p>

자료 ⑤

<p>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p> <p>.....</p> <p>.....</p>
<p>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한다.</p>	<p>②문화관광부장관은</p> <p>.....</p> <p>.....</p> <p>.....</p> <p>.....</p> <p>.....</p>
<p>③문화체육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p>	<p>③문화관광부장관은.....</p> <p>.....</p> <p>.....</p>
<p>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p>	<p>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 별표 3의 1급정사서의 자격요건란의 제3호중 “문화체육부령”을 “문화관광부령”으로 하고, 동란의 제4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문화체육부령”을 “문화관광부령”으로 하며, 동표의 비교란 중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을 “등록을 하지 아니한”으로 한다.

자료 ⑥

개정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문화관광부령 제29호,관보 1999.7.29.게재)

현행 규칙	개정 규칙
<p>제3조 【자격증의 교부신청】 ①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 영 별표3의 2급 정사서란 제1호, 준사서란의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하여는 당해학교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영 별표3의 1급정사서란의 제4호,2급정사서란의 제4호·제6호 및 제7호, 준사서란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사서자격교육과정 이수예정자에</p>	<p>제3조 【자격증의 교부신청】 ①</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라 한다)의 사서자격교육과정 이수예정자에 대하여는 당해교육기관의 장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각각 <u>문화체육부장관</u>에게 해당 자격증의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교부신청자 외의 자가 사서자격증 교부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서자격증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u>문화체육부장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2호 생략</p>	<p>.....</p> <p>..... <u>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 관한규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도서관협회장(이하 “한국도서관협회장”이라 한다)</u>.....</p> <p>②.....</p> <p>.....</p> <p>.....</p> <p>..... <u>문화관광부장관</u>에게 1-2호(현행과 같음)</p>
<p>제4조 【자격증의 재교부신청】 자격증을 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닳아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격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서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u>문화체육부장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증이 닳아서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 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제4조 【자격증의 재교부신청】 한국도서관협회장.....</p> <p>.....</p> <p>.....</p> <p>.....</p> <p>.....</p>
<p>제5조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서자격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사서자격증과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u>문화체육부장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조【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문화관광부장관에게</p> <p>.....</p> <p>.....</p> <p>.....</p>
<p>제6조 【연구경력 인정기관】 영 별표3의 1급정사서란의 제3호에서 “기타 <u>문화체육부령</u>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p> <p>1-2호 생략</p>	<p>제6조 【연구경력의 인정기관】 <u>문화관광부령</u>..... 1-2호 (현행과 같음)</p>
<p>제13조 【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 등】 ①항 생략</p> <p>②<u>문화체육부장관</u>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설립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도서관설립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제13조 【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 등】 ①항 (현행과 같음)</p> <p>②<u>문화관광부장관</u>은 1-2호 (현행과 같음)</p>

<p>제14조 【도서관폐관신고서】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폐관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p>	<p>제14조 <삭제></p>
<p>제15조 【문고설립신고서 등】 ①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문고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문고설립신고서에 별지 제17호서식의 문고시설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5조 【문고설립신고서 등】 ①..... <u>사립문고의 설립·운영신고</u>를 <u>하고자</u></p>

- 별지 제1호서식중 “문화체육부장관”을 “한국도서관협회장”으로 한다.
-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한국도서관협회장”으로, “문화체육부(도서관정책과)”를 각각 “한국도서관협회”로 한다.
- 별지 제10호서식의 뒷면중 “국립중앙도서관(자료조직과)”을 “국립중앙도서관(납본과)”으로 한다.
- 별지 제11호서식(1)의 뒷면 및 별지 제11호서식(2)의 뒷면중 “국립중앙도서관(서지표준과)”을 각각 “국립중앙도서관(납본과)”으로 한다.
-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한다.
- 별지 제15호서식을 삭제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이용봉사 헌장

우리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은 철저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신뢰받는 도서관인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1. 우리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어떤 형태의 정보든 정확하고 빠르며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우리는 이용자의 조사 연구활동에 적합한 봉사를 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 우리는 지적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철저한 자료수집과 최적의 자료 관리상태를 유지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우리는 모든 이용자를 공정하고 정중하게 대하며 이용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1. 우리는 이용자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 우리는 불친절과 부당한 업무처리로 불편이 초래된 경우 이를 신속히 개선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우리의 다짐을 마련하여 이를 성실히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본자세

- 신뢰성과 책임감 있는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설명근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국민의 공복으로서 단정한 복장과 매너 및 품위를 유지하겠습니다.
- 도서관 이용자를 공명·정대하게 대하며, 친절하고 공손한 자세로 근무에 임하겠습니다.
-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문의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응대하겠습니다.
- 다른 업무중이라도 우선하여 이용자의 말씀부터 경청하겠습니다.

자료 이용서비스

1. 직접 방문하실 경우

- 자료 검색 및 이용에 대해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 자료실 근무자는 자료실 개실 이전에 자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위 환경을 정리하겠습니다.
- 원하는 자료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자료검색 단말기 상태를 항상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자료배가상태를 점검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중식시간에도 중단없이 자료이용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신청한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사유와 추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 이용자가 희망하는 도서는 수시로 구입하여 자료실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 자원봉사자 등 인원의 적정한 배치로 자료대출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 타인의 자료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용자의 휴대폰 울림, 고성잡담 등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주의를 환기시켜 조용하고 쾌적한 자료실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 자료복사는 접수 순서대로 제공하며 양호한 복사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애인 이용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2. 방문하지 않고 이용하실 경우

- 우리 도서관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PC통신(천리안, 하이텔)을 통하여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dlibrary.go.kr>
 -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 PC통신 : go lib
- 야간에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원격지에 계신 이용자의 자료이용 편의를 위하여 사전 전화예약 서비스 및 우편복사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 전화상담 및 예약처 : 정보봉사실
· (02)537-9446, (02)535-4142 교환 275

- 야간자료이용시간 : ~ 21:00까지
- 우편복사 서비스 안내
 - FAX : (02)596-1947
 - 전 화 : (02)535-4142 교환 349
- 전화상담을 할 때에는 정확한 발음과 밝은 목소리로 대화할 것이며 상담내용을 기록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처리원칙>

- 우리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나 불편사항은 즉시 사실확인 조사를 하겠습니다.
- 신고사항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시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가명이나 본인확인이 안되는 민원사항은 그 처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 하겠습니다.
- 사실확인이나 시정에 시일이 오래 소요될 경우 먼저 중간진행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도서관운영에 대해 이용자께서 보내주신 좋은 의견이 채택된 경우
 - 효율성과 비용절감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고
 - 그 결과는 의견을 보내주신 분께 반드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신고방법>

-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불편·불친절·부당·불만족을 느낀 사항은 직접 담당부서 방문, 전화, 건의함 및 그린-옐로우카드함, 인터넷, PC 통신 등 편리한 방법을 통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에 대한 시정조치결과는 소정기일내에 반드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보상방법>

- 이용자께서 검색하신 정보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

- 즉시 사실확인을 거쳐 7일 이내에 시정·처리토록 하겠으며
- 특별한 사유로 인해 시정·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상기 기간내에 그 사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소정 기일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처리가 어려운 사정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정의 보상비 (5,000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를 드리겠습니다.
- 자료복사상태가 불량할 경우 즉시 재복사해 드리고 복사카드 잔액은 요청시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봉사 현장 결과 평가

<결과평가 및 의견수렴>

- 이용자에게 약속한 이용봉사표준이 약속한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간 1회 이상 공표하겠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용봉사 현장』 의견보내기' 난을 신설하여 현장제도에 대한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 또한 현장 이행에 대한 기관장 및 직원들의 관심과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장과의 대화방'을 신설하고 건의 및 신고 사항은 반드시 관장 결재를 받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 활용>

- 현장 이행에 대한 평가결과를 PC통신, 인터넷 홈페이지 및 우리 도서관에서 발행하는 '도서관계' 등에 수록하겠습니다.
- 평가결과를 우리도서관의 이용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개선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또한 정기적으로 수렴한 이용자의 의견은 '이용봉사 현장'의 지속적인 개발·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